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9. 3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주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코로나-19 장기화에 따라 시작된 원격수업이 학교 교육활동의 한 축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.
- 이에 따라 원격수업이 대면수업과 함께 학교 수업의 한 형태로 정착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21세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미래 교육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- 지원사업(안 제5조)
- 실태조사(안 제6조)
- 취약계층 지원(안 제7조)

- 교원 역량강화(안 제8조)
-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(안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원격수업이 대면수업과 함께 학교 수업의 한 형태로 정착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,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는 원격수업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고, 안 제6조에는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7조에는 원격수업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 있는 저소득층·다문화·다자녀·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, 컨설팅,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, 안 제9조에서는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및 원격수업 관련 연구기관·단체·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
-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수업이 앞으로는 대면수업과 함께 학교 수업의 한 형태로 정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격수업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면서,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와 주요내용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